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창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계한
전화 055-239-4327

보 도 자 료
2020. 12. 30.(수)

제 목	甲기업 원전 비상용 발전차 납품 사기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제12조 제1항 제1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창원지방검찰청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는, 금일(12. 30.)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발전차 납품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甲기업 대표이사 등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전차 대금 명목으로 약 6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음(3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유예)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연번	피고인 (나이, 직위)	공소사실 요지	비고
1	A○○ (55세, 대표이사)	피의자들은 FOO, GOO(각 기소유예)과 공모, '19. 12. 한수원㈜에 168시간 동안 연속 가동이 가능한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4대)를 공급함에 있어, '168시간 연속 운전시험' 도중에 엔진이 6차례 정지했음에도 마치 엔진이 정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물품대금 66억 원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구속기소
2	B○○ (61세, 前 부사장		구속기소
3	COO (56세, 前 본부장)		불구속기소 (판사기각)
4	DOO (53세, 팀장)		구속기소
5	EOO (42세, 차장)		불구속기소

2 수사 경과

- ’20. 7. 한수원(주), 피의자 AOO 등 7명 고소
- ’20. 7. ~ 12. 甲기업 등 압수수색, 피의자들 및 참고인 조사
- ’20. 12. 15. A○○, B○○, D○○ 구속영장 발부, C○○ 구속영장 기각
- ’20. 12. 30. A○○, B○○, D○○ 각 구속 구공판, C○○, E○○ 각 불구속 구공판, F○○(과장), G○○(과장) 각 기소유예

3 참고 사항

1 비상용 발전차 도입 및 연속운전 성능시험 취지

- 한수원(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냉각로 등에 전기공급이 끊겨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4개 원자력 본부(고리·새울·월성·한빛)에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하면서 성능 담보**를 위해서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실시하였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전력공급 체계 복구 시까지 7일 소요된 점 고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요구한 발전차 성능조건임

** 실무 협의 과정에서 고리 원전 납품용 1대에 대해서만 성능시험을 하여 성공할 경우 4대 전부를 납품받기로 함

2 사안의 특성

- 피고인들은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 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주)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의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본 건 범행에 이르렀음 ▨